

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927호, **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4년 수입·지출 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정책사업(재무활동), 2,344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	
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체육진흥기금	13,442	15,786	2,344	17.4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10,010	10,010	-	-
시민생활체육 진흥	1,201	1,201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2,221	4,565	2,344	105.5
보전지출	2,221	4,565	2,344	105.5
여유자금 예치	2,221	4,565	2,344	105.5
행정운영경비	10	10	-	-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3,442	15,786
이자수입	2,434	2,434
전입금	7,250	7,250
예치금회수	3,758	6,102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3,442	15,786
비용자성사업비	11,211	11,211
기본경비	10	10
여유자금예치	2,221	4,565

Ⅲ. 검토의견

-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(23억 4,400만원)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23억 4,4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〈표 3-1〉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출합계	13,442	15,786	2,344	17.4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10,010	10,010	-	-
일반예산 (재무활동)	2,221	4,565	2,344	105.5
보전지출	2,221	4,565	2,344	105.5
여유자금예치	2,221	4,565	2,344	105.5
행정운영경비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	10	10	-	-
시민생활체육진흥	1,201	1,201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,
②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4. 5.27) 재구성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이 당초 지출계획(22억 2,100만원)보다 105.5%, 23억 4,4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(45억 6,500만원)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“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”중 증감 및 증감률을 기재하지 않은 바, 이는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4조(기금의 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
2.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
3.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
4.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
5. 전국체육대회,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
6.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
7.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